

2024. 5. 7.(화) 10:00

제3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77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신동운 의원 등 12인

4. 제안사유

- 상임위원장 선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상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하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원장 선거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의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안 제12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상임위원장·부상임위원장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 삭제(안 제12조제6항)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상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원장 선거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의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상임위원장·부상임위원장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를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 개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되,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제12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단서 신설>	② ----- ----- ---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 -----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 개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되,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 ----- ----- ---. <단서 삭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3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의 업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 실제 의회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의 업무 명확화 등으로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달성군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시정”을 “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를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로 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u>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u>
<u>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u>	<u>설치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u>달성군의회</u>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 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u> ----- ----- ----- -----.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u>의회</u> 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 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u>의장</u> 의 지휘·감독 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 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u>대구광역시</u> <u>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u> 의 -----. ② ----- <u>의회 의장(이하 “의장”</u> <u>이라 한다)</u> ----- -----.
제3조(사무국장) ① (생 략)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u>통할</u> 하고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생 략) ② ----- ----- <u>총괄</u> ----- -----
제4조(전문위원) ① <u>소속위원회</u> 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 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u>사무국에는 「대</u> <u>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u> <u>례」에 따른 위원회</u> ----- -----.

② (생 략)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
제5조(정책지원관) ① (생 략)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u>지방의회의원의</u>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의원의 <u>시정</u>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생 략) 6. <u>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u>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u>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군정</u> -----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u>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u>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u> ---.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12.14. 일부개정·시행)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4.1.16. 일부개정, 2024.1.18. 시행)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조례)」 (2023.11.10. 전부개정, 2024.7.1. 시행)

제2조(위원회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4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사무분장에 관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안 제1조)
-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으로 하부조직 조문 삭제(안 제2조)
- 전문위원 임용 직렬 확대(안 제4조)
- 상위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5조)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해당 규칙이 사무분장에 관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가 독립됨에 따라 하부 조직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전문위원 임용 직렬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의회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을 “공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비 및 방청, 참관,”을 “경비, 방청·참관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하여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전문위원은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한 제공”을 “대한 자료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소속위원회”를 “그 밖에 소속 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 의회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u> 」 제7조에 따라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하부조직) <u>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둔다.</u>	<삭 제>
제3조(사무국장) ① <u>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1. (생 략) 2. 문서, 보안, <u>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u> 3. ~ 6. (생 략) 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 21. (생 략) 22. <u>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u>	제3조(사무국장) ①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u> ②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u>공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u> - 3. ~ 6. (현행과 같음) 7. -- <u>경비, 방청·참관 및 -----</u> ----- 8. ~ 21. (현행과 같음) 22. <u>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하여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u>
제4조(전문위원) ① <u>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u>	제4조(전문위원) ①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u> 」에 따른 <u>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u> ----- <u>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u>

② (생 략) 1. (생 략)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5. (생 략)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연구단체 지원 7.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u>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u>---.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대한 자료 제공 3.~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소속 위원회</u>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12.14. 일부개정·시행)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023.6.13. 일부개정·시행)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 방	지 방	지 방	지 방	지방행정사무관	지 방 행 정 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관 리	이 사	부 이	서 기					
		재경	관	관	사 관	관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지 방 세 무 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 방 전 산 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데이터									
	교 육 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 방 교 육 행 정 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 회 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 방 사 회 복 지 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4.1.16. 일부개정, 2024.1.18. 시행)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조례)」
(2021.12.30. 일부개정, 2022.1.13. 시행(개정 전))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조례)」 (2023.11.10. 전부개정, 2024.7.1. 시행)

제2조(위원회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5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58조·제5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개정 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장 대리 변경(직제순 팀장→선임전문위원)(안 제2조제2호)
- 선임전문위원 대리 신설(직제순에 따른 팀장)(안 제2조제3호)
- 지정대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5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에 따라 선임전문위원이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대리를 직제순 팀장에서 선임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 선임전문위원 대리도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대리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으로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국”을 “사무기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가”를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

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중 “제3조 규정” 을 “제3조”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사무기구----- ----- -----.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결원 등”이라 한다)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조(법정대리) ----- ----- ----- ----- 각 호에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2. -----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
<신 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 그 순위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장을 대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

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4조(책임) ----- 제3조-----
----- 사람은 -----
-----.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6.27. 일부개정, 2023.9.28. 시행)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6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장의 결재사항 변경
(안 제2조~제8조)
-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안 제6조)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근무상황의 관리 및 출장 등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 을 “의장(이하 “의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 을 “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국장” 을 “의장” 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를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사무국장” 을 “의장” 으로, “해당년도” 를 “해당연도” 로,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를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 이라 한다)의 사본을 바로” 로, “송부하여야” 를 “보내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를 “등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지” 를 “허가받지” 로,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를 “바로 허가받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본문 중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그가 정하는 감독자” 를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허가를 받지” 를 “허가받지” 로, “단서의 규정에” 를 “단서에도” 로,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를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할 때는 사후에 바로 허가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을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바로”로, “보관하던”을 “관련”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근감독자가”를 “의장이”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장금장치”를 “잠금장치”로, “서류함”을 “서류함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 ----- 의장(이하 “의장” ----- ----- ----- -----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이하 “근무상황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비치 및 관리) ① 의장----- ----- ----- ----- -----.
② 의회사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카드”라 한다)를 작성, 비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의장-----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③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③ 의장----- ----- ----- 해당연도----- -----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그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부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바로 ----- 보내야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 등에 따라 -----.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지 ----- --바로 허가받아야 -----.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 -----.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
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
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
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
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출장기
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작
성, 비치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
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
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 허가받지
 ----- 단서에도
 ----- 정해
진 절차를 밟아야-----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
조제2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
무상황부 등에 따라, 그 외의 출장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
할 때는 사후에 바로 허가받아야 한
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
원 또는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공
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
무상황부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
고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
은 제3조부터 제6조-----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인계) ① -----

---바로 -----
---관련 -----

---의장-----
-----.

② -----

-----.

제9조(서류보관 등) -----
----- 잠금장치
----- 서류함 등-----

-----.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 개정, 2023.9.22.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0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0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전문가 및 군민 의견청취,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6.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성군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개념을 정의하였고,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지침인 ‘의제21’ 채택,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4. 3월 기준 19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달성군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게 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발전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

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전항들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기본전략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 변경
3.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그 내용 반영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분야별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 변경
3.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그 내용 반영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이 있어 제3항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본전략의 심의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군수 또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회 등 보고)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변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

② 군수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군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2022.1.4. 제정, 2022.7.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

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

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조례)」 (2023.4.10. 제정·시행)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 변경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2호

2. 발 의 일: 2024년 4월 11일

3.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6.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7. 검토의견

-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교통사고 등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국가에서는 「교통안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간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부터 대구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명절 연휴 전 각 구·군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무상점검을 시행해왔습니다.
- 현재 대구시 5개 구(동구·서구·남구·수성구·달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시·서구·수성구 등에서 무상점검 행사 추진 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교체로 안전한 운행을 통한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
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제5조(지원 사업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통안전법(법률)」(2023.8.16.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법률)」(2024.2.20.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

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

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8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대구시 구·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이 광역시 평균 판매가격보다 낮고, 청소행정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구·군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여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시에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함.

5. 주요내용

○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격 변동분 수정(안 별표 6)

6.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1. 1. 인상 후 2020. 1. 1. 인상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기하였다가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 대구시 구·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 광역시 평균 판매가격보다 22.9% 낮고, 청소행정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구·군 재정 부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시에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원)

용량별(ℓ)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5	164	16	180
10	309	31	340
20	610	60	670
30	983	97	1,080
50	1,511	149	1,660
75	2,248	222	2,47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6】							[별표 6]			
1)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1) 쓰레기봉투가격(제18조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용량별(1)	현행			개정안			용량별(1)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5	112	8	120	137	13	150	5	164	16	180
10	204	16	220	264	26	290	10	309	31	340
20	398	32	430	510	50	560	20	610	60	670
30	591	49	640	773	77	850	30	983	97	1,080
50	969	81	1,050	1,274	126	1,400	50	1,511	149	1,660
75			1,570	1,893	187	2,080	75	2,248	222	2,470
100	1,917	163	2,080	2,521	249	2,770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④(생략)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⑩(생략)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별표6]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별표 6】과 같다.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1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지상 1층 연면적 621.08㎡	3명	-

- 수탁기관 :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22. 6. 1. ~ 2024. 5. 31.
- 주요업무
 -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위탁자가 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을축제 등)

6.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7. 검토의견

- 본 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 5. 31.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24. 6. 1. ~ 2026. 5. 31.까지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현 수탁기관인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은 2020. 6. 1. ~ 2022. 5. 31.까지 위탁 협약하였고, 2022. 6. 1. ~ 2024. 5. 31.까지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위탁만료가 도래되어, 현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평균 87점으로(평균 70점 이상시 재위탁이 가능)재위탁 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연구하며 쌓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심 사 의 결 서

안 건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의 결 주 문	○ 심사대상 시설 및 수탁기관 · 시 설 명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 수탁기관 : 마을문화센터 송씨협동조합(대표: 황민정) · 위탁기간 : 2022. 6. 1. ~ 2024. 5. 31.(2년)
의 결 내 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음을 의결함.

2024년 4월 18 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군 수	배	준	식	(서명)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	주	홍	(서명)
위 원		배	홍	소	(서명)
위 원		하	헌	정	(서명)
위 원		곽	연	하	(서명)
위 원		홍	창	기	(서명)
위 원		박	순	옥	(서명)
위 원		전	철	호	(서명)

민간위탁 재위탁 의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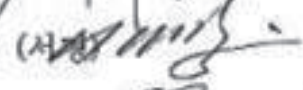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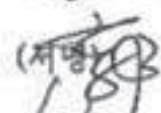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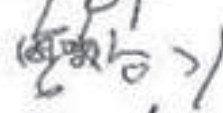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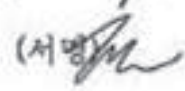
안 건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
의 결 주 문	○ 심사대상 시설 및 수탁기관 · 시 설 명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 수탁기관 : 마을문화센터 송씨협동조합(대표: 황민정) · 위탁기간 : 2022. 6. 1. ~ 2024. 5. 31.(2년)
의 결 내 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심의 결과, 평균점수 <u>87</u> 점 이상으로, 하빈 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함이 (적정, 부적정) 함을 의결함.
2024년 4월 18 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부 군 수 배 춘 식 (서명)	

심 사 집 계 표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합계	평균								
696	87	80	80	94	92	96	80	80	94

심사위원 개별평가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7 점으로, 위 기관의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8.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 주 홍 (서명) 
심사위원		배 홍 소 (서명) 
심사위원		하 헌 정 (서명) 
심사위원		곽 연 하 (서명) 
심사위원		홍 창 기 (서명) 
심사위원		박 순 옥 (서명) 
심사위원		전 철 호 (서명) 

확인자 위 원 장 부 군 수 배 춘 식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표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 우 미 흡	
계	“점수”란에 산정점수 기재	100						
운영자의 적격성 (10)	○ 법인(단체) 유형 및 설립 목적 ○ 사업과의 연관성, 인지도, 공신력 등	10	10	8	6	4	2	
운영자의 전문성 (20)	○ 운영인력의 사업수행 능력(인력과 기구) ○ 재정부담 능력 ○ 유사 사업 집행·연구 실적 및 유사과업 수행 실적	20	20	16	12	8	4	
사업수행 능력평가 (40)	○ 사업추진 전략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주민참여 계획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 ○ 프로그램사업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관련 홍보방안	40	40	32	24	16	8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30)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30	30	24	18	12	6	

상기 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4. 4. .

심사위원

(서명)

달성군수 귀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함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최초 위탁 : 2020. 6. 1. ~ 2022. 5. 31. - 수탁기관 : 마을문화센터 숨씨협동조합 - 재계약 : 2022. 6. 1. ~ 2024. 5. 3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격 의결(2022. 2. 25.) ○ 위탁내용 -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 그 밖에 위탁자가 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마을축제 등)

적 정 성 검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시설 관리자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의 직접 채용이 어려움 ·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 도시재생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하고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을 연구하며 쌓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재계약 대상으로 심의 후 선정하였기에 해당 기관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 매월 기념관 방문객 수 및 체험 프로그램 수입을 보고받고 있음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기 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마을문화센터 숨씨협동조합 ○ 수탁기간 : 2022. 6. 1. ~ 2024. 5. 31. ○ 위탁금 : 235,854,000원(2022년) 291,546,060원(2023년) 300,279,480원(2024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최초 위탁 당시)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수탁기간 : 2024. 6. 1. ~ 2026. 5.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민 간 위 탁 금	○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위탁금 및 금년(금회) <table><tr><td>연도별</td><td>민간위탁금(천원)</td><td>세부 산출내역(천원)</td></tr><tr><td>2022년</td><td>235,854</td><td>인건비 152,091 운영비 83,763</td></tr><tr><td>2023년</td><td>291,546</td><td>인건비 168,983 운영비 122,563</td></tr><tr><td>2024년</td><td>300,279</td><td>인건비 171,654 운영비 128,625</td></tr></table>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천원)	2022년	235,854	인건비 152,091 운영비 83,763	2023년	291,546	인건비 168,983 운영비 122,563	2024년	300,279	인건비 171,654 운영비 128,625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천원)											
2022년	235,854	인건비 152,091 운영비 83,763											
2023년	291,546	인건비 168,983 운영비 122,563											
2024년	300,279	인건비 171,654 운영비 128,625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성장 가능성 제시 ○ 지역주민 참여형 운영을 통한 함께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성장 ○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긍심 확립과 공동체의식 강화 ○ 향후계획 - 2024. 4. :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군의회 제출 - 2024. 5.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전 문 가 의 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위탁이 적격함을 의결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 621.08㎡		
	시설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준공일자	2019. 6. 28.	개관일자	2019. 8. 16.
	이용대상	주민 및 방문객	수용인원	약 50명
	보유장비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		
위치도				
지역여건	○ 하빈면 봉촌리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현장사진	 〈사진 설명〉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입구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2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및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소통·봄꿈’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천내리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 고
주 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및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소통·봄꿈’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20길 17-1	· 1층 : 작은도서관, 주민휴게공간 · 2층 : 작은도서관, 청소년교류공간 · 3층 : 주민교류공간, 공유부엌 · 4층 : 도시재생지원센터, 중회의실 마을관리협동조합	· (1~2층) ※교육청소년과 운영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주민 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3,4층 운영·관리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사무국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비 고
인 원	4명	1	1	2	

※ 수탁자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라. 위탁기간: 2024. 5. 20. ~ 2025.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항 제2호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그간 추진일정)

- 2019.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선정
- 2020. 8.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22. 10. : 거점시설 주민·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착공
- 2022. 1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24. 1. : 거점시설 주민·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준공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바. 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신규위탁 건)

마. 향후일정

- 2024. 4.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통·봄꿈’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심의
- 2024. 3. ~ 7. :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물품 구입
- 2024. 7. ~ : 거점시설 주민·청소년 ‘소통·봄꿈’ 공간 운영

6.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본 위탁동의안은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및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소통·봄꿈’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사무를 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소통·봄꿈 3~4층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2024. 1. 준공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이 센터는 2020년 8월부터 도시재생업무를 진행해 온 코디네이터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그 간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 여러 가지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구축된 인력풀 활용 용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과 성과물을 찾아 업무에 적용하기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과,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운영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부. 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 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 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창작소,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문화 · 여가시설
4.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주민·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관리위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도시재생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주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선순환 피드백을 유도하기 위한 전담 조직에 관리위탁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 상급기관 지침 및 자체 방침서 기재 -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및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화원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소통·봄꿈’ 운영 계획(2024.3.12.)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2019.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선정 - 2020. 8.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22. 10. : 거점시설 주민·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착공 - 2022. 1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24. 1. : 거점시설 주민·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준공 ○ 위탁기간: 2024. 5. 20. ~ 2025. 12. 31. ○ 위탁내용 - 주민 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3~4층) 운영 및 관리

적 검 정 성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시재생특별법」 및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군 조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공동이용시설(거점시설, 주차장, 주민공동공간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최근 몇 년간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음. - 주민 청소년 공간 ‘소통·봄꿈’의 운영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유익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 경제적 효율성 - 진행사업이 공공을 위한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민행복지수 증진 및 만족감 증대에 초점을 맞추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기간 동안 도시재생업무를 진행해 온 코디네이터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그 간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지식 충분 - 여러 가지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구축된 인력풀 활용 용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과 성과물을 찾아 업무에 적용하기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물리,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목표화를 추진하여 지역조사 진행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토대로 검토 가능
----------------------------------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매뉴얼 및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기준 등 그 외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매월 월간업무 및 집행내역을 보고 받고 있음. 또한 반기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 복무사항 및 운영비, 사업비 집행 적적성을 현장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위탁사무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2. 5.) 에 따라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선순환 피드백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로의 운영을 통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여)
기존 수탁 기관 및 선정 방법	○ 해당없음(신규선정)
수탁 기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	○ 신규위탁 : 연간 지원 운영비 예상액 (27,900천원) <table><tr><th>연도별</th><th>지원운영비(천원)</th><th>세부 산출내역</th></tr><tr><td>2024년</td><td>27,900</td><td>·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td></tr><tr><td>2025년</td><td>27,900</td><td>·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td></tr><tr><td>2026년</td><td>27,900</td><td>·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td></tr></table>	연도별	지원운영비(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27,900	·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	2025년	27,900	·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	2026년	27,900	·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
연도별	지원운영비(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27,900	·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											
2025년	27,900	·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											
2026년	27,900	· 소통봄꿈 운영 관리용품 3,600 · 소통봄꿈 공공운영비 24,300											
사 용 료 *수익창출형 위탁시 기재	○ 해당없음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주민 청소년 커뮤니티의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 주민간의 화합 도모 및 교류확대 ○ 주민복지,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 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기반을 마련												
전 문 가 의 견	○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제안사업 발굴 ○ 지역에 새로운 문화교육 중심의 공간 형성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커뮤니티 활성화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주민 청소년 공간 ‘소통·봄꿈’ (3,4층)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0길 17-1		
	시설규모	3층~4층(면적 609.54㎡)		
	시설용도	천내리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주민 역량 강화사업 추진, 주민·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준공일자	2024. 1. 30.	개원일자	2024. 4. 예정
	이용대상	천내리(달성군) 주민	수용인원	50명 정도
	보유장비	사무용가구, PC 등		
위치도				
지역여건	○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로 인해 인구, 사업체 등 지역 쇠퇴 현상 지속 ○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부족 ○ 옥포 택지개발지구, 현풍·유가 테크노폴리스, 구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변지역의 성장에 비해 정체			

현
장
사
진



전경



측면 및 뒷면



주민교류공간(3층)



중회의실(4층)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3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 고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옥포읍 옥포로 3	면적 66㎡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화원읍 비슬로520길 17-1	면적 304.77㎡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시설물, 장비, 물품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회 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 사	회 원
인 원	26명	1	3	1	2	19

라. 위탁기간: 2024. 4. 1. ~ 2025.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그간 추진일정)

- 2024. 2. : 성과평가 및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4. 2. : 위원회 재계약 의결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아. 성과평가 결과

- 적합(평균 91.2점)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붙임첨부

자. 향후일정

- 2024. 4. : 군의회 동의
- 2024. 4. : 공보 게재

6. 관계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7. 검토의견

- 본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기간 (2021. 4. 1. ~ 2024. 3. 31.)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센터로,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현장센터로,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 사업내용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조합 및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운영인력은 각각 사무국장 1명, 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사회적경제 협의회가 2024. 4. 1. ~ 2025. 12. 31.까지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평균 91.2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도시재생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9조(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

【붙임 4】

심 사 의 결 서

구분	심사결과(점수)							
	합계	평균						
	456	91.2	91	공식	86	88	95	96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균 70점 미만으로)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 부적격)한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

확인자

위 원 장 배 초식 

부위원장 공석 (배리출장) (서명)

담당자 김 원영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정판단 심사평가표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계	"점수"란에 산정점수 기재	100
운영자의 적격성	소 계	10
	- 법인(단체)유형 및 설립목적	5
	- 사업과의 연관성, 인지도, 공신력 등	5
운영자의 전문성	소 계	20
	- 운영인력의 사업수행 능력(인력과 기구)	10
	- 재정부담 능력	5
	-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집행·연구 실적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5
사업수행 능력평가	소 계	40
	- 사업추진 전략	10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5
	- 주민참여 계획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10
	- 프로그램사업 내용의 적정성	10
	- 사업 추진 관련 홍보방안	5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소 계	30
	-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15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도시재생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추진 역량 강화 ○ 주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선순환 피드백을 유도하기 위한 전담 조직 필요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6조,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2021. 2.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1. 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2021. 4.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2. : 성과평가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 2024. 4. : 군 의회 동의 ○ 위탁기간: 2024. 4. 1. ~ 2025. 12. 31. ○ 위탁내용 -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적 검 정 성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한창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인 현 시점에서는 위탁사무방식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 달성3색 문화창조 도시 브랜드 구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이 높은 편.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기간 동안 도시재생업무를 진행해온 코디네이터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그간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지식 충분 - 여러 가지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해오면서 구축된 인력풀 활용 용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과 성과물을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기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물리,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목표화를 추진하여 지역조사 진행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토대로 검토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매뉴얼 및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준 등 그 외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월간업무 및 집행내역을 보고 받고 있음. 또한 반기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 복무사항 및 운영비,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현장점검하고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

	○ 위탁사무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수탁기관의 의견수렴이 유용하고 운영관리면에서 효율적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참고할만한 점이 다수있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여)
기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 - 기 관 명 :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 회 장 : 이 두 식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재계약 ○ 수탁자 - 기 관 명 :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 회 장 : 김 효 현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4길 27 - 구 성 : 26명(회장1, 부회장3, 사무국장1, 감사2, 회원19)

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	○ 민간위탁 : 연간 지원금액 <table><tr><th>연도별</th><th>운영비(백만원)</th><th>세부 산출내역</th></tr><tr><td>2024년</td><td>520</td><td>·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60</td></tr><tr><td>2025년</td><td>440</td><td>·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2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20</td></tr><tr><td>2026년</td><td>440</td><td>·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2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20</td></tr></table>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각 사무국장1, 코디네이터 3) 및 공공운영비 지급	연도별	운영비(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520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60	2025년	440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2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20	2026년	440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2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20
연도별	운영비(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520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60											
2025년	440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2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20											
2026년	440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20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20											
사 용 료 *수익창출형 위탁시 기재	○ 해당없음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 소통창구 마련과 지역 공동체 응집력 강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 ○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설 및 주민역량 기반확보 ○ 향후 거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사회로의 주민복지 증진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전 문 가 의 건	○ 사업진행을 중반기를 넘어선 천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 진행 초기인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의 올바른 사업진행방향 설정과 향후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유지 및 이를 관리, 운영지도 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관의 역할이 중요 ○ 도시재생사업은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주민 등의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접근이 쉽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형성이 요구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달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3		
	시설규모	면적 66㎡		
	시설용도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도시재생 신규공모사업 지원		
	준공일자	2008. 9. 1.	개원일자	2016. 3. 4.
	이용대상	주민, 업무관계자	수용인원	5명
	보유장비	사무용가구, PC 등		
위치도				
지역여건	○ 주변의 설화명곡역, 여성문화복지시설, 아파트 주택단지 조성 등 주위 발전여건에 비해 정체되어 있음 ○ 좁고 어두운 마을안길, 노후화되고 방치된 빈집 다수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0길 17-1 (천내리 재생거점시설 주민청소년공간 ‘소통·봄꿈’ 4층)		
	시설규모	면적 304.77㎡		
	시설용도	-천내리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준공일자	2024. 1. 30.	개원일자	2020. 8. 18.
	이용대상	주민, 업무관계자	수용인원	40명
	보유장비	사무용가구, PC 등		
위치도				
지역여건	○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로 인해 인구, 사업체 등 지역 쇠퇴 현상 지속 ○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부족			

현 장 사 진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대 상 기 관 검 토 내 용	위탁사무명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리·운영
	예산 및 기간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백만원/연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60백만원/연
	대상기관명(대표자)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김호현)
	주요사업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공유 및 온, 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달성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사업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설 립 : 2013. 7. 19 -주요연혁 ·2013. 7. :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총회 ·2013. 8. :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 ·2013. 10. : 달성군사회적 경제 희망 한마당 개최 ·2014. 10. : 달성군사회적 경제 희망 한마당 개최 ·2018. 9. : 강정보 디아크 별빛문화축제 행사 개최 ·2020. 11.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주관 ·2021. 4.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2022. 9. :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우리도 소셜 메이커' 운영 ·2023. 5. : LH, 사회적기업 홍보관 수탁 ·2023. 7. : 대구 사회적경제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인력현황	-인 원 : 26명(임원 7명, 직원 19명) -기 구 : 회장1, 부회장 3, 사무국장 1, 감사 2 (참여업체 총 26개소) -자격증 소지현황 : 직업상담, 사회복지학, 재활심리학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총재산 : 건물, 토지, 예금.....해당없음 -부 채 : 해당없음 -수 입 : 해당없음 -재정부담이행실적 : 해당없음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시설물 : 로비 외 4실, 전용면적(148.41㎡) - 수탁 -보유장비 : PC 1, 냉장고 1, 책상 3, 의자 20, 파티션1 등

대 상 기 관 검 토 내 용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연 도	내 용
	2021년	- 소규모재생사업 '눈꽃(설화)처럼 밝은 설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 구축사업' 운영 - 2022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공모 지원 -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민간부문 '우수상' 수상 - 도시재생예비사업 '다함께 사는 우리가 남2家' 공모 및 선정
	2022년	- 논공읍 남2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 및 운영 - 도시재생예비사업 '다함께 사는 우리가 남2家' 운영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공모 지원 및 선정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	2023년	- 2022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운영 - 현풍읍 원교 1,2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북적북적 백년시장 약자지결 드림마루' 공모 지원
	-성과평가 결과(91.2점 재계약) -지도·감독 및 감사 등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 ①물품 구매후 사후 지출품의 결재 → 사전 지출품의를 득한 후 물품 구매토록 지도 ②관외출장 교통비 증빙서류 미비 → 교통비 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보완토록 지도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김효현)

2.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4길 27

3. 설립목적 :

- 달성군 소재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이해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3. 07.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총회
2013. 08.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
2013. 10.	달성군사회적 경제 희망 한마당 개최
2014. 10.	제 2회 달성군사회적경제 희망 한마당 개최
2015. 07.	달성군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실시
2016. 07.	달성군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실시
2018. 09.	강정보 디아크 별빛문화축제 행사 개최
2019. 03.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임원선출
2020. 11.	달성군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주관
2020. 12.	위메프 지역 상생사업 실시
2021. 04.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위·수탁 운영
2021. 11.	2021 달성군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2022. 09.	2022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우리도 소셜메이커’ 운영
2022. 10.	2022 사회적경제기업 달성 행복나눔 장터 개최
2023. 05.	달성군 현풍읍 소재 LH 사회적기업 홍보관 수탁.
2023. 06.	달성군 지역특화사업(사회적경제 청소년 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5. 주요사업

- 사회적 경제주체와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책건의, 정보교환
-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활성화 사업
- 달성군 도시재생 홍보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 및 지역사회 화합도모,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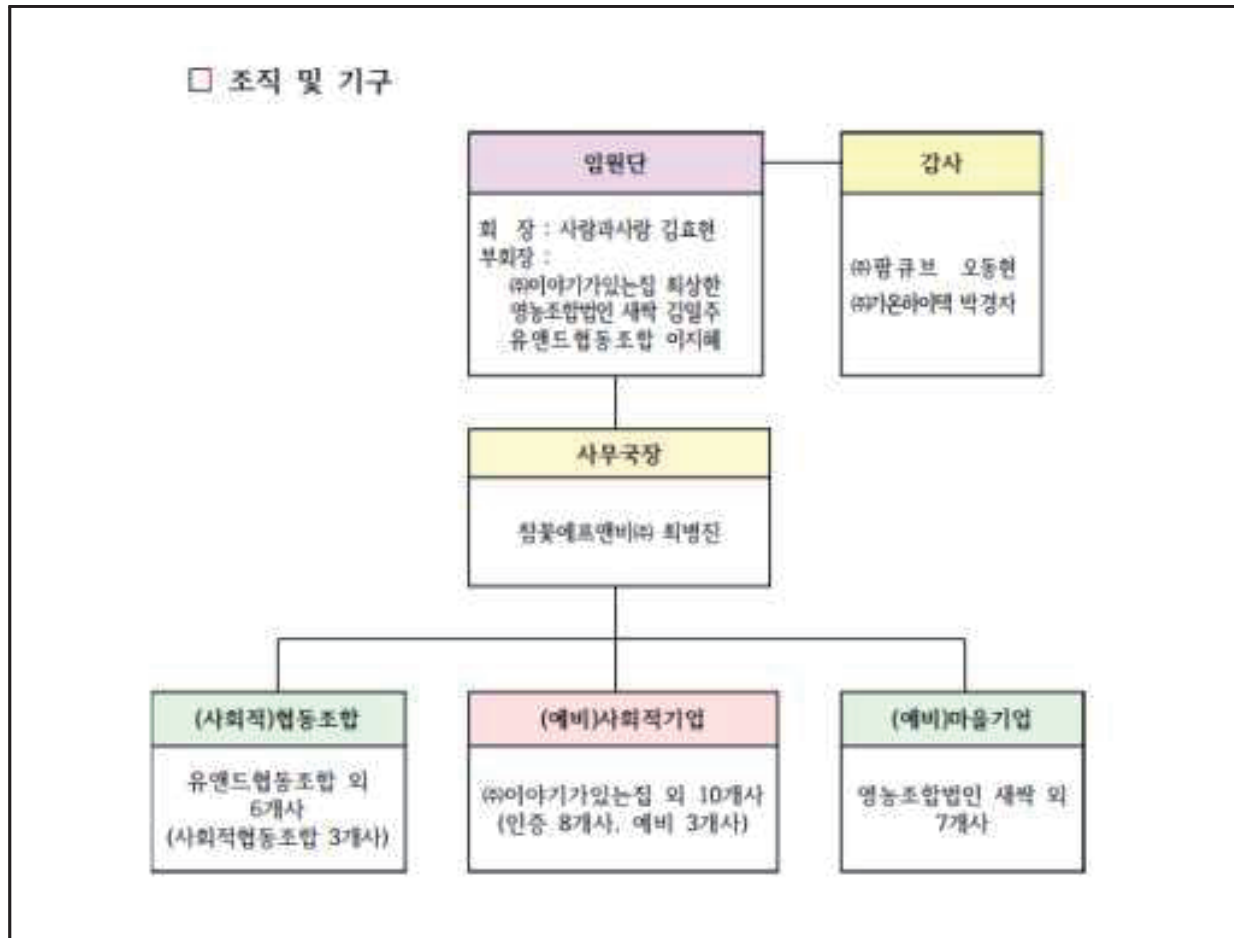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회장	김효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 설립(2019)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20)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표창(2022) -민선8기 달성군수직 교육·복지분야 인수위원 위촉(2022)
부회장	최상한	-전)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대구지부장
부회장	김일주	-전)하빈면 새마을회장
부회장	이지혜	-경북도립노인병원
사무국장	최병진	-달성군주민참여예산청년분과위원장
감사	박경자	-영남장애인달성군지부장
감사	오동현	-대구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사

7. 회원현황: 총 19명

직 위	성 명	기업명	유형	비고
회원	우승윤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회적기업	
회원	임경희	(주)아름도자기	사회적기업	
회원	김경미	모모디자인(주)	사회적기업	
회원	김진수	까나베나(주)	사회적기업	
회원	배재순	(주)행복한동행	사회적기업	
회원	곽경애	(주)블루아트컴퍼니	예비사회적기업	
회원	김경아	제이제이힐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회원	이무희	(사)정인사회복지회	마을기업	
회원	이두식	(주)달성레저	마을기업	
회원	강건영	농업회사법인 행원정	마을기업	
회원	배종관	팔조령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회원	박춘미	강정보여울 협동조합	마을기업	
회원	권준하	마송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회원	황준업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즈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천보경	아가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백창훈	한국제과식품 협동조합	협동조합	
회원	양영순	두송공예 협동조합	협동조합	
회원	길은숙	이룸교육문화 협동조합	협동조합	
회원	금교혁	나이스팜 협동조합	협동조합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해당없음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 해당없음	
수익용재산		· 비영리기관으로 해당없음	
기타재산	동산(건물)	· 소유자 : LH주택공사, 전용면적 148.41m ² , 무상임대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 채: 총 천원

내 용	금 액(천원)
해당없음	

다. 수 입: 총 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해당없음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신규 수의협약 시 기재 생략)

재협약 현황	○ 재협약 회수: 1회, 총 수탁기간: 2024. 4. 1. ~ 2025. 12. 31. - 의회 동의안을 거쳐 향후 재협약 예정																		
재정부담 이행실적	○ 해당없음(비영리기관에 따른 수익금 없음)																		
사업추진 실적	○ 사업 우수성과 - 위탁기간 동안(2021. 4. 1. ~ 2024. 3.31.)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사업 발전에 기여 -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민간부문 ‘우수상’ 수상 - 2021 도시재생예비사업 ‘多함께 사는 우리가 남2家’ 공모 및 선정 - 2022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공모 지원 및 선정																		
세입·세출 내역서	○ 세입내역 : -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백만원 -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60백만원 ○ 세출내역 : <table><tr><th></th><th>계</th><th>인건비</th><th>공공운영비</th><th>사업비</th><th>예비비</th></tr><tr><td>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td><td>260</td><td>229</td><td>28</td><td></td><td>3</td></tr><tr><td>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td><td>260</td><td>213</td><td>33</td><td>2</td><td>12</td></tr></table>		계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	229	28		3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60	213	33	2	12
	계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60	229	28		3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60	213	33	2	12														

성 과 평 가 결 과	○ 평가일시: 2024. 2. 21. ~ 2. 26. (4일간, 서면) ○ 평가기관: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여부 심의 ○ 평가점수: 91.2 ○ 총 평: 원활한 센터운업을 위해 직원간 원만한 조직문화 선도, 지역사회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업무 적극 참여 및 지도, 관리운영 ※ 성과평가결과서 첨부															
감 사 실 시 결 과	○ 일 시: 2023. 11. 30.(목)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 12. 1.(금)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지적사항 1: 물품 구매후 사후 지출품의 결재 - 조치결과: 사전 지출품의를 득한 후 물품 구매토록 지도 ○ 지적사항 2: 관외출장 교통비 증빙서류 미비 - 조치결과: 교통비 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보완토록 지도															
재 정 투 자 계 획	<table><tr><th></th><th>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th><th>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th><th>비 고</th></tr><tr><td>2025년</td><td>220백만원</td><td>220백만원</td><td></td></tr><tr><td>2026년</td><td>220백만원</td><td>220백만원</td><td></td></tr></table>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비 고	2025년	220백만원	220백만원		2026년	220백만원	220백만원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비 고													
2025년	220백만원	220백만원														
2026년	220백만원	220백만원														
서 비 스 개 선 계 획	○ 개선목표: 주민의 참여로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 ○ 개선방안: - 도시재생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 유도 -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현															
향 후 추 진 계 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법 강구 -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도래 및 거점시설 준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사후관리를 위해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의 통합운영을 검토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4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송해기념관 (선비체험관)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98	지상 3층 연면적 850.84㎡	4명	-

- 수탁기관 : (주)에인다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24. 4. 1. ~ 2026. 3. 31.
- 주요업무
 -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위탁자가 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을축제 등)

6.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7. 검토의견

- 본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인 (주)에인다와 재계약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에인다는 2022. 4. 1. ~ 2024. 3. 31.까지 2년간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을 위탁운영해 온 기관으로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 지난 2023. 12.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2024. 4. 1. ~ 2026. 3. 31.까지 재계약 하고자 의사 표시를 해 오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평균 82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많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에인다와 위탁 재계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협약으로 정한다.
- ⑤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심 사 의 결 서

안 건	달성군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의 결 주 문	○ 심사대상 시설 및 위탁 운영단체 ・ 시설명 : 달성군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 수탁자 : ㈜에인다 (대표: 서영희) ・ 위탁기간 : 2024. 4. 1. ~ 2026. 3. 31.(2년)
의 결 내 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격, 부적격)함을 의결함.
2023년 12월 26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부 군 수 배 춘 식 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곽 병 하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심 사 집 계 표

구분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합계	평균						
	492	82	86	74	82	94	80	76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2 점 이상으로,
위 기관을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 부적격)한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12. 26.

심사자	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과 병 하 (서명)	
	심사위원		하 현 정 (서명)	
	심사위원		배 흥 소 (서명)	
	심사위원		곽 연 하 (서명)	
	심사위원		석 미 숙 (서명)	

확인자 위 원 장 부 군 수 배 춘 식 (서명)

달성군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기관 적정판단 심사평가표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 우 미 흡	
계	“점수”란에 산정점수 기재	100						
운영자의 적격성 (10)	○ 법인(단체) 유형 및 설립 목적 ○ 사업과의 연관성, 인지도, 공신력 등	10	10	8	6	4	2	
운영자의 전문성 (20)	○ 운영인력의 사업수행 능력(인력과 기구) ○ 재정부담 능력 ○ 유사 사업 집행·연구 실적 및 유사과업 수행 실적	20	20	16	12	8	4	
사업수행 능력평가 (40)	○ 사업추진 전략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주민참여 계획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 ○ 프로그램사업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관련 홍보방안	40	40	32	24	16	8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30)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30	30	24	18	12	6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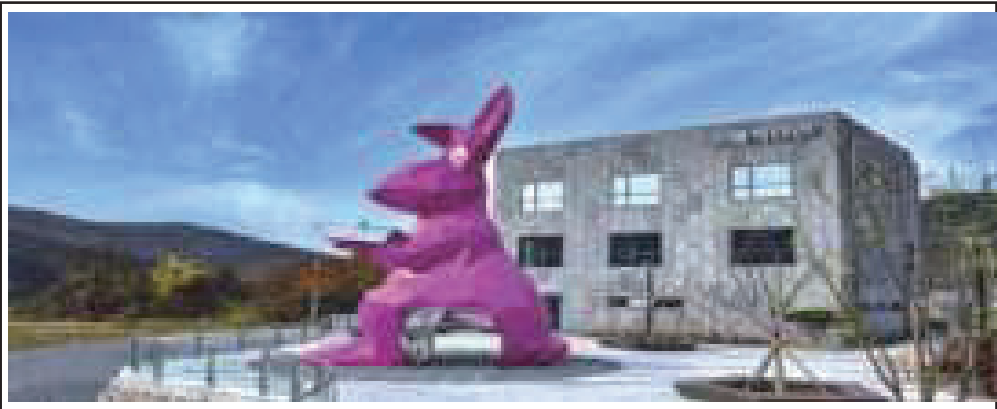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함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최초 위탁 : 2022. 4. 1. ~ 2024. 3. 31. - 수탁기관 : (주)에인다 ○ 위탁기간 : 2년(2024. 4. 1. ~ 2026. 3. 31.) ○ 위탁내용 -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 그 밖에 위탁자가 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마을축제 등)

적 정 성 검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시설 관리자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의 직접 채용이 어려움 ·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재계약 대상으로 심의 후 선정하였기에 해당 기관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 매월 기념관 방문객 수 및 체험 프로그램 수입을 보고받고 있음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기 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주)에이다 ○ 수탁기간 : 2022. 4. 1. ~ 2024. 3. 31. ○ 위탁금 : 169,401,000원(2022년) 341,318,250원(2023년) 320,390,000원(2024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최초 위탁 당시)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주)에이다 ○ 수탁기간 : 2024. 4. 1. ~ 2026. 3. 31.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

민 간 위 탁 금	○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위탁금 및 금년(금회) <table><tr><th>연도별</th><th>민간위탁금(천원)</th><th>세부 산출내역(천원)</th></tr><tr><td>2022년</td><td>169,401</td><td>인건비 94,677 운영비 74,724</td></tr><tr><td>2023년</td><td>341,319</td><td>인건비 187,719 운영비 153,600</td></tr><tr><td>2024년</td><td>320,390</td><td>인건비 193,375 운영비 127,015</td></tr></table>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천원)	2022년	169,401	인건비 94,677 운영비 74,724	2023년	341,319	인건비 187,719 운영비 153,600	2024년	320,390	인건비 193,375 운영비 127,015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천원)											
2022년	169,401	인건비 94,677 운영비 74,724											
2023년	341,319	인건비 187,719 운영비 153,600											
2024년	320,390	인건비 193,375 운영비 127,015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지역사회 대표 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서 성장 가능성 제시 ○ 지역주민 참여형 운영을 통한 함께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성장 ○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긍심 확립과 공동체의식 강화 ○ 향후계획 - 2024. 3.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24. 4.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보고)												
전 문 가 의 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함을 의결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 설 개 요	시 설 명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56길 5		
	시 설 규 모	지상 3층, 연면적 850.84㎡		
	시 설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준 공 일 자	2021. 11. 16.	개 관 일 자	2021. 12. 2.
	이 용 대 상	주민 및 방문객	수 용 인 원	약 50명
	보 유 장 비	컴퓨터, 복사기, 빔프로젝터 등		
위 치 도				
지 역 여 건	○ 송해공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평소에도 방문객 다수			
현 장 사 진	 〈사진 설명〉 송해기념관 근처 주민쉼터의 토끼 조형물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건여	○ 해당 시설의 수탁 가능 업체 수 : 총 1개[(주)에인다]	
재계약 사유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의결	
대상기관 검토 내용	위탁사무명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민간위탁관리
	예산 및 기간	320,390천원 / 2024. 4. 1. ~ 2026. 3. 31.(2년)
	대상기관명(대표자)	(주)에인다(대표: 서영희)
	주요사업	선비문화체험, 인의예지문화체험, 송해밥상음식체험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22. 4. 1. 최초 위탁
	인력현황	대표 1명, 총괄팀장 1명, 직원 2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 100% 이직률 :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총재산 : 949,000천원 -고정자산 : 480,000천원 -유동자산 : 469,000천원 부채 : 282,390천원 수입 : 468,476천원(2023년 기준)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전통 혼례용품 30종, 도포 150벌, 남녀한복 각 200벌, 사진 및 영상촬영장비 1SET, 조명 및 배경시스템 2SET, 전래 놀이용품 30종 이상(투호, 윷놀이, 제기 등)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낙경청 문화학교 / 2021) 2021 선비의 하루, 고택체험 (달서구 / 2021)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 시 작성)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주)에인다(대표: 서영희)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13길 18
053)638-6171

3. 설립목적 : 전통문화체험교육 분야 맞춤형 체험교육 연구 및 개발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2. 6. 29.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법인 설립
2018. 3. 21.	사업자등록명칭변경(주식회사 에인다)
2021. 3. 1.	낙정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기획 및 운영 용역
2022. 4.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위탁운영

5. 주요사업

- 과업기간 내 전체 프로그램 운영·관리계획 수립
- 기세리의 장소적 특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관광상품(브랜드) 개발에 따른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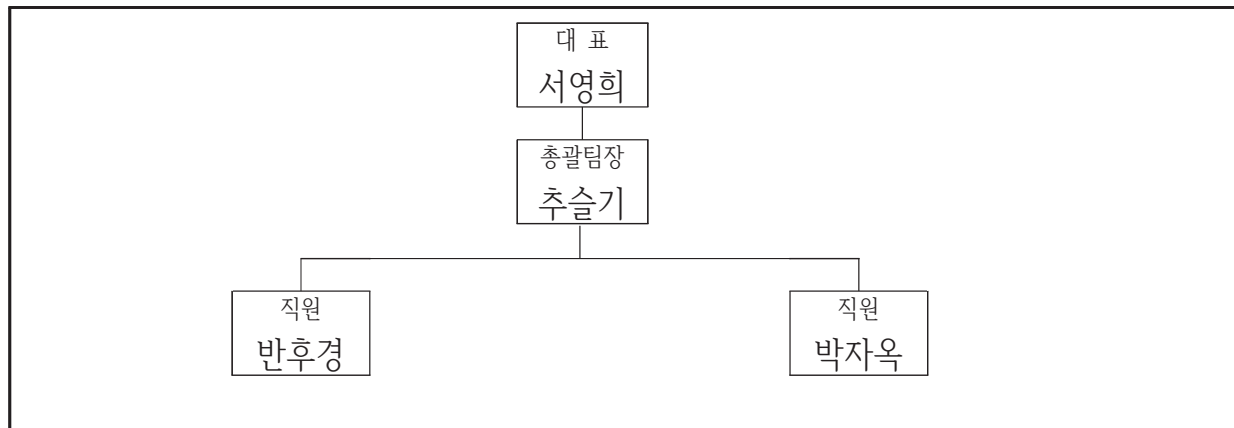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대표	서영희	국가등록 민간자격 가정의레지도사 어린이·청소년 예절체험지도사 1급 한국전통요리사 1급 달서구마을기업협의회 1대 회장
총괄팀장	추슬기	사회복지사 2급 어린이·청소년 예절체험지도사 1급 2018 대구광역시장 표창(사회적경제 활성화)

7. 직원현황 : 총 2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직원	반후경	한국전통요리지도사1급 직업상담사 2급	송해기념관 선비체험관 체험프로그램 교육운영 강사	2023. 4. ~	정규직
직원	박자옥	진로체험전문강사 조향사	송해기념관 선비체험관 체험프로그램 교육운영 강사	2024. 1. ~	정규직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 949,000천원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고정자산	부동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13길 18	480,000
유동자산	동산	현금, 장비, 재료 등	469,000

나. 부 채 : 총 282,390천원

내 용	금 액(천원)
사업수행 등을 통해 발생한 부채	282,390

다. 수 입 : 총 468,476천원(2023년 기준)

내 용	연 수입액(천원)
민간위탁운영사업(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운영)	280,476
기타 자체수익사업(자체상품, 자격증 양성과정)	188,000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

재협약 현황	○ 재협약 횟수 : 1회, 총 수탁기간 : 4년 - 2024. 4. 1. ~ 2026. 3. 31.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의결
사업추진 실적	○ 사업 우수성과 -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운영실적(2022~2023년) ① 체험 프로그램 : 총 8,472명 참여 / 38,946,000원 수입 ② 기세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컨설팅 지원 : 2022년 21회 / 2023년 52회 ③ 제1회 선견지마을 선비문화축제 개최(2023년 11월 10~11일) : 방문객 880명 이상 /1,673,000원 수입
성과평가 결과	○ 평가일시 : 2023. 12. 26. ○ 평가기관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점수 : 평균 82점 ○ 총 평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의결 ※ 성과평가결과서 첨부
감사 실시 결과	○ 일 시: 2023. 12. 28. ○ 지적사항 1 - 분기별 정산 보고 미흡 - 관련 규정 숙지 후 분기별 정산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 필요시 감사보고서 첨부
향후 추진계획	○ 송해기념관(선비체험관)의 지속적 이용 -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기세리 마을과의 지속적 협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5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위탁대상 : 현수막 지정게시대 129개소 480면
 - 공공용 게시대 : 72개소 204면
 - 상업용 게시대 : 57개소 276면
- 수탁기관 : 주식회사 자우버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
- 주요업무
 -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
 -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
 - 기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0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7. 검토의견

- 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관내 현수막 위탁대상 지정게시대는 129개소 480면이며, 공공용 게시대가 72개소 204면, 상업용 게시대가 57개소 276면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주)자우버는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수리·보수, 게시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현 수탁기관인 (주)자우버는 2021. 4. 1. ~ 2024. 3. 31.까지 3년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해 온 기관으로,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하여, 올해 3월 민간위탁 재계약을 2024. 4. 1. ~ 2027. 3. 31.까지 재계약 하고자 의사 표시를 해 오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평균 82.6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다년간 관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주)자우버와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 1부. 끝.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탁절차는 제1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심 사 의 결 서

구분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합계	평균							
	578	82.6	86	74	88	82	86	88	74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주식회사 자우버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균 70점 미만으로), 달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합이 (적격, 부적격)한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12.

확인자 위 원 장 부 군 수 배 춘 식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 주 흥

담당자 주 무 관 추 양 호

달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판단 심사평가표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 우 미 흡	
계	“점수”란에 산정점수 기재	100						
운영자의 적격성 (10)	○ 법인(단체) 유형 및 설립 목적 ○ 사업과의 연관성, 인지도, 공신력 등	10	10	8	6	4	2	
사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30)	○ 시설별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계획 ○ 인력 확보 및 인력 수급 계획 ○ 보유 장비 현황 및 활용 방안	30	30	24	18	12	6	
협약 이행 가능성 (30)	○ 효율적인 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운용 계획 ○ 게시대 신고 민원 접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및 공무수탁자로서의 공정성 제고 방안 ○ 게시대 게첨롤 증대 방안	30	30	24	18	12	6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30)	○ 게시대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민원처리 대처 방안 ○ 시설물 관리 점검계획 및 풍수해 등 재해 대응 계획의 타당성	30	30	24	18	12	6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달성군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최초 위탁 : 2018. 4. 1. ~ 2021. 3. 31. ※최초 위탁 후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자우버 재선정(2021. 4. 1. ~ 2024. 3. 31.) - 수탁기관 : 주식회사 자우버 ○ 위탁기간 : 3년(2024. 4. 1. ~ 2027. 3. 31.) ○ 위탁내용 -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 -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 - 기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적 정 성 검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현수막 게시대 관리자의 직접 채용이 어려움 ·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 현수막 게시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현수막 게시를 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 매월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 현수막 게시대를 다년간 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재계약 대상으로 심의 후 선정하였기에 해당 기관의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 매월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를 납부 받고 있음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기 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주식회사 자우버 ○ 수탁기간 : 2021. 4. 1. ~ 2024. 3. 31.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주식회사 자우버 ○ 수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 획	○ 현수막 게시 관리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 사고위험 또는 파손된 게시대의 교체 및 보수 ○ 게시 신청 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전 문 가 의 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함을 의결함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여건	○ 해당 시설의 수탁 가능 업체 수 : 총 1개(주식회사 자우버)	
재계 약 사 유	○ 법적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의결	
대 상 기 관 검 토 내 용	위탁사무명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예산 및 기간	0원 / 2024. 4. 1. ~ 2027. 3. 31.(3년)
	대상기관명(대표자)	주식회사 자우버(대표: 전정승)
	주요사업	- 현수막 게시 신고 접수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8. 4. 1. 최초 위탁
	인력현황	대표 1명, 직원 14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10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총재산 : 1,167,528천원 수입 : 28,080천원(2023년 기준)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트럭(포터Ⅱ) 3대, 승용차 1대, 크레인3.5t 1대 , 실사출력기 2개 보유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매월 상업용 현수막 게시 접수 게시대 주기적 점검 실시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 시 작성)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주식회사 자우버(대표: 전정승)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76길 3
053)794-7788
3. 설립목적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04. 3.	대구 사무실 및 실사출력실 자우버 신설
2008. 5.	자우버 사무실 및 공장 신축
2009. 3.	직접생산증명 획득
2011. 4.	주식회사 자우버 설립
2018. 4.	달성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 선정

5. 주요사업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및 보수
-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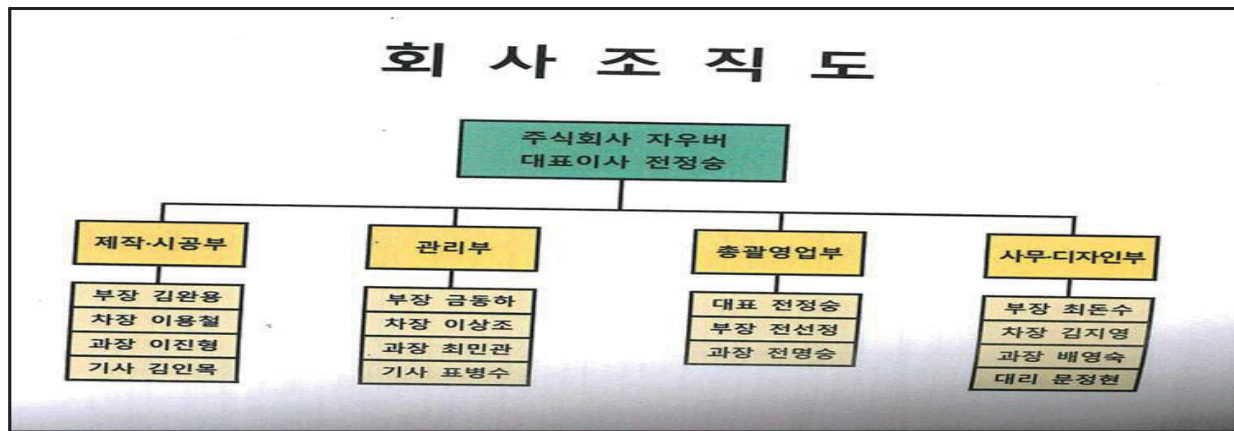
6. 대표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대표	전정승	건축도장기능사 취득

7. 직원현황 : 총 14명(기술인력 4명 포함)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부장	금동하	옥외광고사2급 건축도장기능사	관리	2021. 1. ~	정규직
부장	최돈수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디자인	2017. 5. ~	정규직
부장	김완용	건축도장기능사	제작·시공	2021. 7. ~	정규직
차장	이용철	건축도장기능사	제작·시공	2021. 2. ~	정규직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 1,167,528천원

나. 수 입: 총 28,080천원(2023년 기준)

내 용	연 수입액(천원)
광고 유치료(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최상단)	28,080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

재 협 약 현 황	○ 재협약 횟수 : 1회, 총 수탁기간: 9년 - 2018. 4. 1. ~ 2021. 3. 31.(최초 협약) - 2021. 4. 1. ~ 2024. 3. 31.(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 - 2024. 4. 1. ~ 2027. 3. 31.(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협약 의결)
사 업 추 진 실 적	○ 매월 상업용 현수막 게시 접수 - 월 2회(전반기: 1~15일, 후반기: 16~30일) - 현수막 추첨 신청 신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고 ○ 게시대 주기적 점검 실시 - 점검 대상 : 129개소(공공용 72개소, 상업용 57개소)

성 과 평 가 결 과	○ 평가일시 : 2024. 3. 7. ~ 3. 12. ○ 평가기관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 주식회사 자우버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점수 : 평균 82.6점 ○ 총 평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의결 ※ 성과평가결과서 첨부
서 비 스 개 선 계 획	○ 개선목표 : 상업용 현수막 게시 기회 확대 ○ 개선방안 : 게시기간 10일간 월3회로 조정 - 다수의 시민들에게 기회 제공 - 불법광고물 사전 방지 도모 - 게시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게시시설 활용
향 후 추 진 계 획	○ 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 강제 철거 ○ 달성군과 협의하여 노후게시대를 신규 반자동게시대로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6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3.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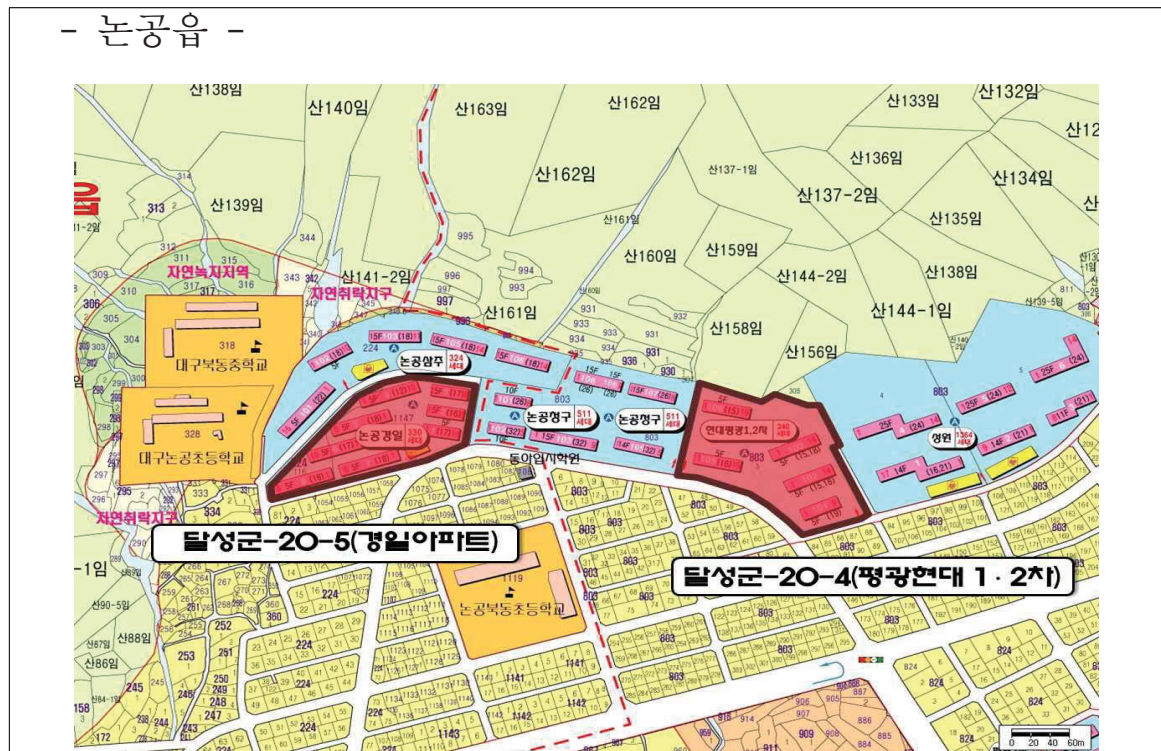
5. 주요내용

- 구 역 명 : 달성군-20-4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외 4개 구역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리 803-3번지 일원 외 4개소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5개 구역)
- 해체사유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3.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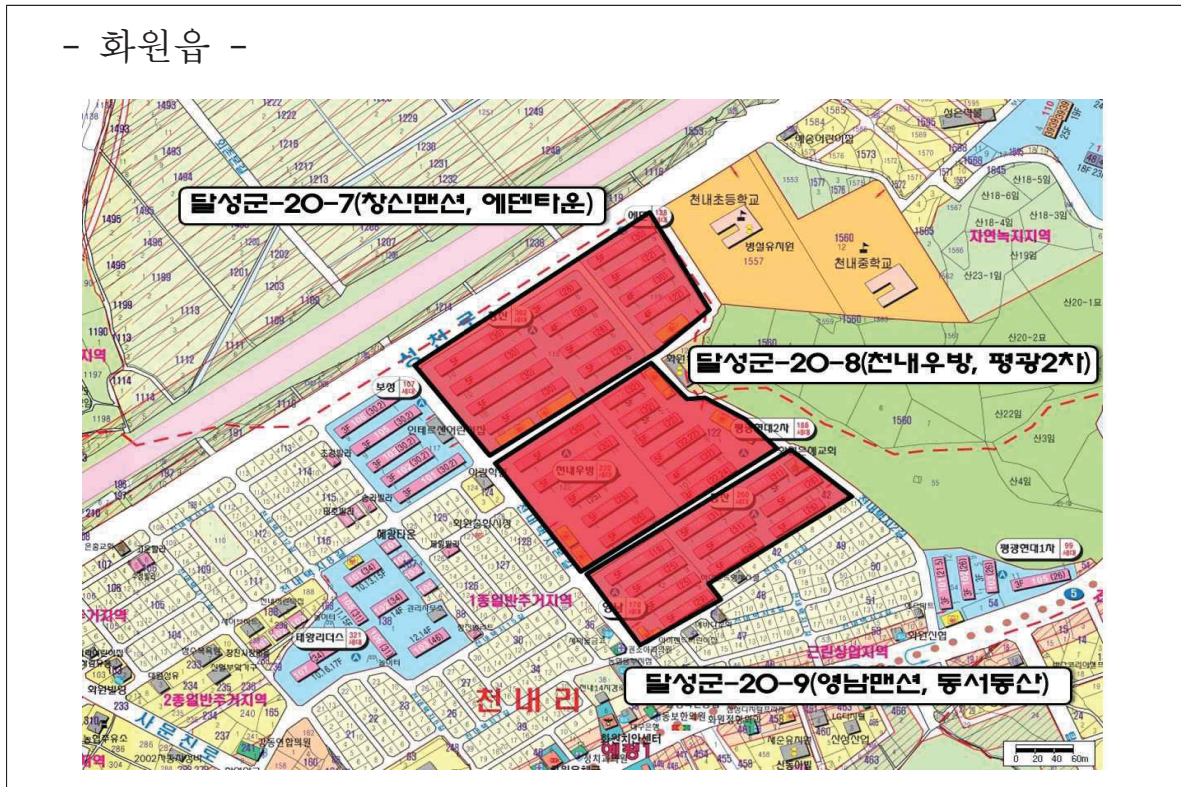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분	구역번호	위 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고시일	비고
기정	달성군-20-4	논공읍 북리 803-3번지 일원	19,247	재건축	2013.4.1.	평광현대 1·2차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5	논공읍 남리 1147번지 일원	16,239	재건축	2013.4.1.	경일아파트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7	화원읍 천내리 118번지 일원	37,941	재건축	2018.12.31.	창신맨션, 에텐타운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8	화원읍 천내리 122번지 일원	34,500	재건축	2018.12.31.	천내우방, 평광2차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9	화원읍 천내리 42번지 일원	22,433	재건축	2018.12.31.	영남맨션, 동서동산
변경	해 제					

○ 위치도



- 화원읍 -



○ 주민 의견청취

- 기 간 : 2024. 02. 29. ~ 2024. 04. 15.(31일간)
- 장 소 : 달성군 건축과
- 공람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청취결과 : 제출의견 없음

6.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7. 검토의견

- 본 달성군-20-4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외 4개구역은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3.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제1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의회 의견을 듣고,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대상구역 중 논공지역 2개소 (평광현대 1·2차, 경일아파트)는 2013. 4. 1.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화원지역 3개소(창신맨션·에덴타운, 천내우방·평광2차, 영남맨션·동서동산)는 2018. 12. 31.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3. 10. 26.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도래 후, 해제절차 및 해제기간 연장 여부 등을 공지하였으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4. 2. 2.9.~ 2024. 4. 15.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불가피하게 해제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추후 재건축에 대한 추진요인이 발생하는 등 상황 변화가 있을 시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재지정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주거환경 개선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78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11일

3.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장애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장애예술인 활동 수행사무의 위탁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4.]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식 제고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3.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군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수행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2.9.27., 일부개정, 2023.3.28. 시행)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

제15조의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예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예술인차별금지법)(2021.7.27. 일부개정, 2023.1.28. 시행)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79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11일

3.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

5.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추가(안 제4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관한 지원의 범위 추가
(안 제5조 제1항)
- 수당 및 지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2013. 10. 30. 제정 이후 타법 개정 사항 반영과 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개정사항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기반한 개정 사항 정비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 특히, 지난 2023년 달성군의회 생활정책연구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성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시할”을 “할”로 한다.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달성군”을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제2항 중 “때에는” 을 “때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을 “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 “인정될 때는”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 를 “지원단체” 로, “에 대하여 경비 또는 활동을” 을 “에게 그 지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탁하는 경우에” 를 “위탁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하는 경우에” 를 “운영할 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	제1조(목적) --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 제4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1. 2. (현행과 같음) 3. <u>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할 -----. 제3조(지원대상) ----- 따른

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때는 -----

제9조(회의) ① -----

----- 때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정될 때는 -----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① -----

지원단체에게 그 지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탁할 때 -----
-----.

③ -----
-----운영할 때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23.3.28 일부 개정 2023.3.28 시행)
-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1. 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2.10.28 전부개정 2022.10.28 시행)
-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전 처리의 필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한다.
 2. 심사수당
 -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전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서면·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
 3. 실비: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여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1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11일
3.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5인
4. 제안사유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정책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제4조))
-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규정(제5조~제6조)
- 중복지원 제한,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제7조~제9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와 단절된 대상들의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들의 지원 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달성군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변화, 취업위기, 가정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으며 최근 대두된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 의회는 2023년 은둔형 외톨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생활양식 변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의 복리 지원을 힘쓰고 있는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

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및 지원방안
4.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연계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2. 10. 28. 일부 개정·시행)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7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관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 제4조)
-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사업 등
(안 제6조 ~ 제10조)
-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안 제15조)

6.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 향후 달성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업무 담당자 또는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회의체 구성 등 제도화를 권장하였으며,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도 지표 내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제도운영 등의 추진 실적을 세부 지표로 반영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렴 시책 추진과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및 출자·출연단체장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

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평가)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5조(포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89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 신설 및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 확대로 관내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 신설(안 제26조)
- 다자녀 기준 변경(안 제27조제3항제13호, 제33조제4항제5호)
- 장난감도서관 회원자격 확대(안 제31조제2항)

6.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아울러, 영유아 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자격 및 대여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2항 단서 중 “소속지원으로”를 “소속직원으로”로 한다.

제2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회원)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3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3항제9호 중 “「국국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3항제13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제31조(중전의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그
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
(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
집의 보육교직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4항제5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4항제7호 중 “「북한이탈주민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6조) 중 “제2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중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를 “제38조”로, “제29조제3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를 “제41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3조제2항, 제34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 름 표	5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1. ----- 7세 이하 ----- -----. 2. ----- ----- ----- -----. 3.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 -----.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 2. ----- 지원대상자 ---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기능) -----. 1. ----- 2. ----- 3. ----- ----- 4. ----- ----- 5. ----- ----- 6. ----- ----- 7. ----- 8. ----- 9. ----- ----- 10. ----- -----

현행	개정안
제23조(구성)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u>소속지원</u> 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구성) ② ----- ----- ----- ----- ----- <u>소속직원</u> -----, ----- ----- -----.
<신설>	제26조(회원)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u>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u> ② 센터의 <u>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u>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시설 사용료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 국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13. <u>세자녀 이상 가정</u> : 50%	제27조(시설 사용료 등) ③ ----- ----- -----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9. 「국 국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

현행	개정안
제27조(정의) (생략)	제28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8조(명칭) (생략)	제29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9조(기능) (생략)	제30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원가입)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u>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영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장 등(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u>	제31조(회원가입)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그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u>
제31조(회원의 의무) (생략)	제32조(회원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32조(연회비) ① 회원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5. <u>세 자녀 이상 가정</u> ... 7. 「 <u>북한이탈주민법</u>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3조(연회비) ① ----- 제31조제1항에 ----- ... ④ ----- ----- ----- ... 5. 「 <u>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 」 -----
제3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생략)	제3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용제한) (생략)	제35조(이용제한) (현행과 같음)
제35조(관리·운영) (생략)	제36조(관리·운영) (현행과 같음)
제3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36조제1항----- ----- ----- -----.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위탁시설·물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는 아니된다. ② ~ ⑤ (생략)	제3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제36조-----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지휘·감독) (생략)	제39조(지휘·감독) (현행과 같음)
제3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략)	제4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 ----- ----- ----- 제36조 ----- -----.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 ----- 3. 제38조----- ----- 제36조 ----- ----- 4. 제39조----- ----- 5. (현행과 같음)

제40조(비용의 보조) (생략)

제41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42조(평가 및 포상) (생략)

제43조(시행규칙) (생략)

[별표 1]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2조제2항, 제33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1조제2항 관련)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음표	500원	

제41조(비용의 보조) (현행과 같음)

제42조(보조금 등의 반환) -----
----- 제41조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43조(평가 및 포상) (현행과 같음)

제4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1]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3조제2항, 제34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14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 입 가 격 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음표	500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일: 2024. 8. 7.]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 5. (생략)

[시행일: 2023. 6.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90호

2. 제 출 일: 2024년 4월 25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관련 문구 변경(안 제1조 ~ 제2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6.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 19409호, 2023. 5. 16., 제정] 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에 근거법령을 「문화재보호법」 제 19조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변경하고
- 법인명칭의 변경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로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4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 중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1항”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 ----- ----- ----- -----.
제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사무위탁) ① -----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